

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「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Kofpi 한국임업진흥원장

1 시험일정

시행회차	원서접수	시험장소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	비고
10회	1차 '24.01.08(월) 09:00 ~ '24.01.12(금) 18:00	원서 접수 시 공고	'24.02.24(토)	'24.04.12(금) 18:00	
	2차 '24.06.03(월) 09:00 ~ '24.06.07(금) 18:00		'24.07.13(토)	'24.09.13(금) 18:00	

※ 시험 일정은 국가 및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(60일전 변경 공지)

2

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(아래 1), 2)를 모두 갖추어야 함)

1)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 관련

「산림보호법」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

2)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 별표 1 관련

- (1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(2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(3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(4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(가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술사, 조경기술사, 산림기사·산업기사, 조경기사·산업기사, 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 자격
 - (나)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
 - (다)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분야) 자격
- (5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(6)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(7)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<비고>

(1) "수목진료 관련 학과"란 조경과, 농업과,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함

(2) "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"란 나무병원,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 피해 진단·처방·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함

※ '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(산림청 고시)'를 통해 정하고 있음

나. 결격사유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5)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음

1) 미성년자

2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) 「산림보호법」, 「농약관리법」 또는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접수기간

시행회차		접수 기간
제10회	1차	2024. 01. 08.(월) 09:00~2024. 01. 12.(금) 18:00
	2차	2024. 06. 03.(월) 09:00~2024. 06. 07.(금) 18:00

※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나. 접수방법

1) 온라인 접수

-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에서 접수
-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
- 원서접수 마감시각(18:00)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됨
- 접수 가능 사진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무배경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(3.5cm × 4.5cm, jpg파일)

※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※ 접수 불가 사진

-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, 선글라스·모자를 착용한 사진
- 혼란한 배경 사진, 스냅사진, 기타 본인 식별이 어려운 사진

2)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
-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시행기관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지불이 완료되어야 접수한 것으로 봄
-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
-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
- 원서는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함(원서 출력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같이 출력하여 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)

3) 접수 시 유의사항

-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
- 단, 불가피한 사정*으로 원서 제출 마감일까지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(2024. 2. 5.(월) 09:00~2024. 2. 23.(금) 15:00) 내에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 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을 통해 등록을 해야하며, 기간 내 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함
 - ※ 불가피한 사정: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~1차 시험일 사이에 관련 자격증이 발급되는 경우 등의 사정에 한함
 - 응시자격 증빙서류, 양성교육 교육이수 여부 심사 기준일은 1차 시험일 임
- 응시자격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

-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, 기재사항의 착오·누락 또는 연락 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(시험 응시 불가 등)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 기재사항 수정 방법
 - "원서접수 기간 내"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변경, 재접수 가능
 - "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" 시행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

다. 수수료 납부

- 응시수수료: 제1차 시험 20,000원, 제2차 시험 47,000원
- 납부방법: 전자결제(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
 - 수수료 환불 기준 및 방법 [별첨 1] 참고

라. 수험표 교부

-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수험표 출력 기간에 출력 또는 발급된 수험표를 시험당일 지참

□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제2항 별표 1의2

구분	유형	시험과목(배점)	시험방법
1차 시험	선택형 필기시험	① 수목병리학(100점) ② 수목해충학(100점) ③ 수목생리학(100점) ④ 산림토양학(100점) ⑤ 수목관리학(100점) 가. 비생물적피해(기상·산불·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) 나. 농약관리 다. 「산림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	객관식 5지 택일형
		①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(100점)	
2차 시험	실기시험	②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, 약제처리와 외과수술(100점)	

※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·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·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

※ 시험시간, 시험방식 등은 원서접수 시 상세공지

※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는 '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목록'을 기준으로 함

5**합격자 결정**

가. 제1차 시험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제4항)

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나. 제2차 시험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제4항)

-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6**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**

가. 합격자 발표 일시

시행회차		발표 일시
제10회	1차	2024. 04. 12.(금) 18:00
	2차	2024. 09. 13.(금) 18:00

나. 발표방법

-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에서 30일간 확인 가능

7 기타 사항

가. 장애인, 임산부 등 응시편의 제공

- 장애인, 임산부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후 제공
- ※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에 **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의사 진단서 등)를 제출**

나. 1차 시험 면제

-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함
- 다만,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함
- ※ 단, 면제기간 만료일이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의 시작일을 포함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
회차	합격일자	면제기간	응시가능 회차	비고
제7회 1차	'22. 07. 01.	'22. 07. 02.~'24. 07. 01.	제10회 2차	'24년 면제기간 만료
제8회 1차	'22. 11. 25.	'22. 11. 26.~'24. 11. 25.		
제9회 1차	'23. 08. 11.	'23. 08. 12.~'25. 08. 11.	-	-

다. 아래와 같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 수험자 안내 사항을 추가 공지하여 안내

- 1)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
- 2) 국가 위기단계,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발생 시

나무의사 자격의 엄정·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, 시험 시행·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을 참조하시거나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(1600-3248, 나무의사 4번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